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1. 12 선고 2023가단373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소송대리인 C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포항시 북구 D 전 16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선내(ㄱ)부분 지상 목조 칼라 함석지붕 단층창고 23㎡ 및 별지 도면 표시 2, 6, 7, 8, 9, 10, 11, 12,
13, 3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부분 지상 시멘트 바닥 49㎡를 철거하고,
나. 위 (ㄱ),(ㄴ)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 538,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1,114,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24. 10. 1.부터 위 (ㄱ),(ㄴ)부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
21,8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1. 5. 2.부터 포항시 북구 D 전 16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.

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포항시 북구 E(도로명 주소 포항시 북구 F) 대 179㎡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구조 스테이지붕 단독주택은 2011. 2. 23.부터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8. 11. 16.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나.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부분 미등기 무허가 목조 칼라 함석지붕 단층창고 23㎡ 및 별지 도면 표시 2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3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부분 지상 시멘트 바닥 49㎡를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.

다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피고들 소유 토지 및 주택의 등기명의기간에 따른 과거 임료와 장래 임료는 아래와 같다(과거 임료 산정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인 2023. 12.

18.부터 소멸시효 10년을 역산한 2013. 12. 19.을 시기로 하고, 감정일에 가까운 2024. 9.

30.까지로 한다. 장래 임료 산정기간은 위 종기 다음날인 2024. 10. 1.로 하되, 금액은 월 임료로 한다).

1) 피고 C 명익에 해당하는 2013. 12. 19.부터 2018. 11. 16.까지

① 2013. 12. 19.부터 2017. 12. 18.까지 428,575원

② 2017. 12. 19.부터 2018. 11. 16.까지 109,913원(=120,475원 × 333/365)

③ 합계 538,488원

2) 피고 B가 이전받은 2018. 11. 17.부터 인도시까지

① 2018. 11. 17.부터 2024. 9. 30.까지 1,114,311원(=917,601원 + 196,710원)

② 2024. 10. 1. 이후부터 월 21,857원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1)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(ㄱ),(ㄴ)부분 건물 및 시멘트바닥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2)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C은 538,488원, 피고 B는 1,114,3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. 1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3) 피고 B는 위 (ㄱ),(ㄴ)부분 토지 인도일까지 월 21,85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희

별지